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64 발의연월일: 2024. 8. 23.

발 의 자: 김석기·김도읍·인요한

구자근 • 이인선 • 김 건

조지연 · 김선교 · 김정재

김승수 · 송언석 · 엄태영

천하람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처벌대상을 외국이 아닌 적국으로 한정함으로써 적국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 등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간첩 죄로 처벌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우방국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간첩행위에 대해서는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98조의 '적국'을 '외국'으로 수정하여 외국을 위한 포괄적 간첩행위 등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8조).

법률 제 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 및 제2항 중 "敵國"을 각각 "외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98條(間諜) ① <u>敵國</u> 을 爲하여 間	第98條(間諜) ①외국
諜하거나 <u>敵國</u> 의 間諜을 幇助	<u>외국</u>
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 7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② 軍事上의 機密을 <u>敵國</u> 에 漏	②
泄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